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31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이원택·박희승·문대림

이병진 • 윤준병 • 주철현

서삼석 • 한병도 • 안호영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 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18세 이상으로서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임업 및 어업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①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	
역 · 지리적 여건 · 교통 ·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1
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	
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	
재 <u>「주민등록법」 제7조제1</u>	<u>18세 이상으로서 제15조</u>
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u>조사한 인구</u> 로 한다.	의 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2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u>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u> 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u>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임업</u>
한다.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u>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